
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신청서

성명		휴대폰번호	010 -	-
주민등록번호 (13자리)	-			
집 주소 (주민등록상주소)				

신청유형 (필수체크√)	검사주기	해당분야
	☐ 1년	식품분야 종사자 (식당, 카페, 편의점, PC방, 식품판매, 봉사활동 등)
	☐ 3개월/6개월	유흥/다방 분야 (나이트, 노래주점, 다방 등 1종 유흥업소)
	☐ 6개월	학교급식 종사자 (초, 중, 고등학교 배식 종사자)

수수료 (필수체크√)	☐ 3,000원	검단구 주민, 검단구 영업장 종사(예정)자 (재직증명서 제출 필수)
	☐ 6,000원	그 외(타지역 주민)

개인정보 제공동의 (필수동의)	<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> ※ 상기의 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7조, 제23조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등록 및 개인의 건강검진 내역의 보장을 위해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3년간 보존됩니다. ※ 동의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합니다.(필수)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☒ 동의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개인정보 타기관 제공동의 (선택)	<개인정보의 타기관 제공>			
	제공받는 자	제공목적	제공 항목	보유기간
	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	건강진단결과서 발급	발급대상자 성명/주민등록번호, 일련번호/접수번호, 검진 및 판정일, 검진항목 및 결과	발급일로부터 3년
	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한 경우 신청 기관에서만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며, 타 기관에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. ※ 타 보건소에서 발급을 원하시면 동의에 체크하세요.(선택)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 ☐ 미동의			

발급대상자(신청인)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 검단구보건소장 귀하

안내 및 유의사항

- 동 신청서와 함께 발급대상자 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)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임신부는 방사전실에서 미리 말씀해주세요.
-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 후 세균배양 및 판정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검사일로부터 약 7일 이후 수령이 가능하며, 정확한 소요기간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검단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(예정)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(예정)증명서(별지 제1호서식 또는 영업장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등)를 제출해야 50%감액이 가능합니다.
-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은 검사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*을 통해 발급가능 합니다.
- *“공공보건포털(<http://www.g-health.kr>)” 웹사이트 > 온라인민원서비스 > 제증명발급 또는 “정부24(<http://www.gov.kr>)” 웹사이트 > 민원신청 > 신청·조회·발급 >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